

### 1. 공종 분류 오류가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# 상담요청

○○건설은「○○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」 물량내역서에서 '캐워크(Catwalk)' 설치공사가 '철골공사'로 분류되어 있으나, 이를 '잡철물공사'로 변경하는 것이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?

#### □ 상담내용

- 「건축부문 표준품셈」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절차서에 따르면, 구조체(골조)가 아닌 금속 부속품·점검통로·난간 등은 통상 '잡철물공사'로 분류됩니다. 다만, 설계도면에 구조체로 명시되었거나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'철골공사'로 분류 가능합니다.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19조 제1항 제1호: 설계 내용의 불분명·누락·오류 시 설계변경 가능합니다.
- 본 건 캐워크는 경량 철재(파이프, 앵글, 철판 등)로 구성, 발주처 시방서에 '철골공사' 항목 부재 및 '금속공사' 항목 존재, 철골공사와 시공 방식·역할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. 따라서 본 공사는 '잡철물공사'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, 현 분류(철골공사)는 설계서의 분류 오류로 보여지므로, 이를 잡철물공사로 변경하는 것은 설계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.

## 2. 정산시 누락된 퇴직공제부금의 청구 가능 여부

### 상담요청

○○건설은 공사 정산 과정에서 누락 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에 청구할수 있는지?

### □ 상담내용

-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은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퇴직공제 가입 및 부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,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2조·제23조는 법령상 의무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대법원 판례도 법정 의무 이행 비용은 별도 합의 없이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퇴직공제부금은 법정 의무에 따른 비용으로, 정산 시 누락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. 다만, 계약금액이 이미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거나, 정산서에 ‘추가 청구 없음’과 같은 면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부금 납부 사실과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, 증빙 부족 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 또는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